

『위험물안전관리자』 강습(자격취득) 교육 안내

(Ver 19.3)



구 분		주 요 내 용										
근거 법령		위험물안전관리법										
시행 근거		시행규칙 제78조(안전교육)										
교육 대상	신청 자격	<p>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</p> <p>★ 제외대상 : 위험물분야 자격 취득자 및 결격 해당자 제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f9cb9c;">위험물분야 자격분야 및 경력자(자격취득 불 필요)</td> </tr> <tr> <td>근거 :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관련 별표 6</td> </tr> <tr> <td>1. 자격자 :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</td> </tr> <tr> <td>2. 경력자 : 소방공무원경력자(3년이상)</td> </tr> </table>	위험물분야 자격분야 및 경력자(자격취득 불 필요)	근거 :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관련 별표 6	1. 자격자 :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	2. 경력자 : 소방공무원경력자(3년이상)						
	위험물분야 자격분야 및 경력자(자격취득 불 필요)											
근거 :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관련 별표 6												
1. 자격자 : 위험물기능장, 위험물산업기사, 위험물기능사												
2. 경력자 : 소방공무원경력자(3년이상)												
결격 사유	<p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5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, 시각 및 청각장애인(단,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) 팔,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자 기타 교육실시책임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동일 교육과정 자격취득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<p>※ 근거 : 안전원 「교육업무규정」 제21조제1항</p>											
교육 안내	과정명	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										
	강습일정	안전원사이트 강습일정 참고 강습 일정(Click)										
	교육 과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9cb9c;">교육과정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9cb9c;">교육형태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9cb9c;">교육시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9cb9c;">교육장소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f9cb9c;">수수료(원)</th> </tr> <tr> <td>집합과정</td> <td>소집교육</td> <td>소집 3일(24시간)</td> <td>안전원 교육장</td> <td>120,000원</td> </tr> </table> <p>교육 교재 미리 보기(Click)</p>	교육과정	교육형태	교육시간	교육장소	수수료(원)	집합과정	소집교육	소집 3일(24시간)	안전원 교육장	120,000원
	교육과정	교육형태	교육시간	교육장소	수수료(원)							
	집합과정	소집교육	소집 3일(24시간)	안전원 교육장	120,000원							
학습 흐름도												
수료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집교육(3일) → 수료(자격 취득) 수료시 「위험물안전관리자 수첩」이 발급됩니다. 											
일정변경	해당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(단, 해당 연도 강습일정에 한하여 일정변경 가능)											
교육장소	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											
교육 접수	접수방법	내방(시도지부) 및 인터넷 접수(선착순 마감)										
	수수료	<p>교육수수료 : 120,000원</p> <p>※계산서는 현금(무통장입금 포함)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. (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)</p>										

<p>제출 서류</p>	<p>사진(3.5*4.5cm) 1매, 신분증(교육당일 지참)</p>	
	<p>환불 규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환불기준</p>
<p>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</p>		<p>전 액</p>
<p>과오납한 경우</p>		<p>과오납 금액</p>
<p>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</p>		<p>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</p>
<p>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</p>		<p>교육수수료의 20% 공제한 금액</p>
<p>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</p>		<p>없음</p>
<p>[환불 유의사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, 별도의 공제 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으며, 해당 지부로 방문 하셔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.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 이 환불됩니다. 		
<p>자격취득 후 선임대상</p>	<p>위험물안전관리자(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의 위험물취급) 선임</p>	
<p>수료 후 타 자격 취득시 혜택</p>	<p>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수료시 「2급 소방안전관리자」 면제과정 수강 가능</p>	
<p>인터넷 교육수수료 결제방법 안내</p>	<p>» 신용카드 결제</p>  <p>주 의 사 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,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을 할 수 없으며,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. 	
	<p>» 무통장 입금</p>  <p>주 의 사 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습교육 신청 후 익일(근무일 기준)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습교육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. 무통장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재사용(다시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)이 불가능합니다. 재사용으로 인한 금전손실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.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, 폰 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확인방법 : http://www.kfsi.or.kr 접속 (교육정보 > 강습정보 > 강습신청내역 메뉴)] 신용(체크)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~3주 정도 지연 될 수 있습니다. 	

지부별 연락처	•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지부 정보(Click)			
	지부(지역)	연락처	지부(지역)	연락처
	서울지부(서울 영등포)	02-2671-9076~8	부산지부(부산 부산진구)	051-553-8423~5
	인천지부(인천 서구)	032-569-1971~2	대구경북지부(대구 중구)	053-429-6911,7911
	경기지부(수원 팔달구)	031-257-0131~3	울산지부(울산 남구)	052-256-9011~2
	경기북부지부(경기 파주시)	031-945-3118,4118	경남지부(창원 의창구)	055-237-2071~3
	대전충남지부(대전 대덕구)	042-638-4119,7119	광주전남지부(광주 광산구)	062-942-6679~81
	충북지부(청주 서원구)	043-237-3119,4119	전북지부(전주 덕진구)	063-212-8315~6
	강원지부(횡성)	033-345-2119 033-345-2120	제주지부(제주시)	064-758-8047 064-755-1193

※ 별첨

『위험물안전관리자』 강습과목 및 시간

강습과목		시간
이 론	소방관계법령	3
	소방학개론	1
	위험물성상	2
	소 계1	6
실 무	위험물제조소등 시설기준	3
	위험물 저장·취급 기준	2
	위험물제조소등 소화·경보·피난설비 기준	1
	소 계2	6
실 습 및 평 가	서식작성 실습·평가 (예방규정, 위험물취급일지, 일반점검표)	3
	위험물제조소등 시설점검 실습·평가	6
	비상대응 실습·평가	1
	응급처치 이론·실습·평가	2
	소 계3	12
총 계		24

비고. 교육종료 전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